

김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제3413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4. 2. 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제안이유

- 재난상황 시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재난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피해복구를 담당하는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시장의 책무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·운영, 구성(안 제3조, 제4조)
- 다. 단장 임무, 실무팀의 편성 (안 제5조, 제6조)
- 라. 지원단의 설치(안 제7조)
- 마. 재난상황 공유·보고(안 제8조)
- 바.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 없음
- 나. 관계 법령 : 붙임
- 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라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가) 입법예고 : 2023. 7. 31. ~ 8. 21.(20일)
 - 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2) 부서협의결과

가) 규제사전심사 : 해당 없음

나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다) 성별영향분석 : 원안 동의

3) 중앙 및 도 관련부서

가) 중앙부처 :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

나) 경 기 도 : 자치행정과

김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책무) 김포시장은 시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,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3조(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·운영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제2항에 따른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대책본부”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“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구성)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지원단의 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 중 행정·재정 총괄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, 재난현장 운영 총괄 단장은 「김포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김포시자원봉사센터(이하 “자원봉사센터”라 한다)의 장이 된다.

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1.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김포시 소속 공무원
2. 자원봉사센터의 직원
3. 「재해구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
4.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법인, 단체 또는 그 기관의 소속된 직원

제5조(단장의 임무)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,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실무팀의 편성)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.

1. 상황총괄팀
2. 모집·배치팀
3. 활동관리팀
4. 활동지원팀

5.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

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,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단의 설치)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1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
2. 「재해구호법」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
3. 자원봉사자의 규모
4.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
5.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

제8조(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)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.

② 대책본부장은 「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·운영 조례」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할 수 있다.

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9조(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)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다.

1.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
2. 자원봉사 활동 우수사례
3. 자원봉사활동의 사진·영상
4.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
5. 그 밖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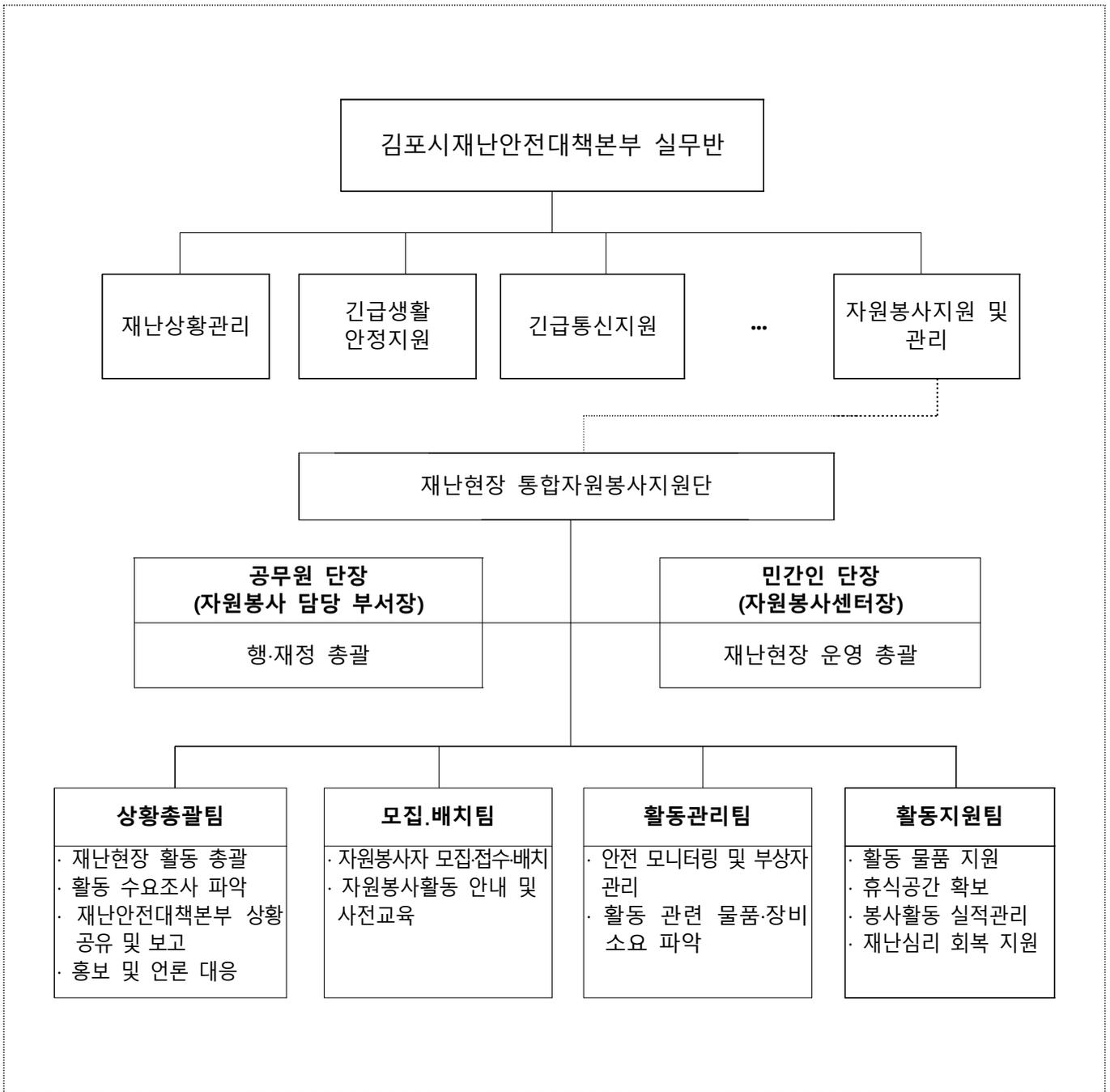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자치행정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성명	자치행정과장 송천영
	팀장 직위·성명	민간협력팀장 장영신
	담당자 성명·전화	지방행정주사보 유보라(☎2266)

[별표 1]

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(제6조제2항 관련)



[별표 2]

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(제6조제2항 관련)

팀명	직위	담당 사무
단장	공무원 (자원봉사 담당 부서장)	▶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행·재정 지원 총괄
	민간인 (자원봉사센터장)	▶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·운영 총괄
상황총괄팀	자원봉사 담당 부서팀장	▶ 지원단 관련 행·재정 지원 ▶ 지역대책본부와의 연계(상황 공유·보고 등)
	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	▶ 재난현장 활동 총괄 ▶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사항 발굴 ▶ 지원단 관련 홍보 및 언론대응
모집·배치팀	자원봉사센터 팀장	▶ 모집·배치팀 업무 총괄
	자원봉사센터 팀원	▶ 자원봉사자 모집·접수·배치 ▶ 자원봉사활동 안내 및 사전교육
활동관리팀	자원봉사센터 팀장	▶ 활동관리팀 업무 총괄
	자원봉사센터 팀원	▶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모니터링(부상자 관리) ▶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·장비 소요 파악
활동지원팀	자원봉사센터 팀장	▶ 활동지원팀 업무 총괄
	자원봉사센터 팀원	▶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 지원 ▶ 자원봉사자 급·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▶ 봉사활동 인정(시간 인정,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)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17조의2(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)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원봉사자의 모집·등록
2.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
3.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
4.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
5.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
6.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○○시/군/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책무) ○○시장은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,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3조(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·운영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제2항에 따른 ○○시 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지역대책본부”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“지역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

제4조(구성)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지원단의 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은 「○○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○○시 자원봉사센터(이하 “자원봉사센터”라 한다)의 장이 된다.

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·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.

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1.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○○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소속 공무원
2. 자원봉사센터의 직원
3.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
4.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

제5조(단장 임무)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,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실무팀의 편성)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.

1. 상황총괄팀
2. 모집·배치팀
3. 활동관리팀
4. 활동지원팀
5.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

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,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

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단의 설치)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1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
2. 「재해구호법」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
3. 자원봉사자의 규모
4.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
5.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

제8조(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)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.

② 지역대책본부장은 「OO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O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.

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9조(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)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.

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,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, 자원봉사활동의 사진·영상,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